



구제역, 힘을 모으고 힘을 내서 막아내자

대한한돈협회



우137-878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21-19 제2축산회관 3층 / ☎(02)581-9751 / Fax581-9768 경영기획부

문서번호	한돈협총 제174-12호	선결		지시	
시행일자	2021. 09. 06.	접수	일자	결재·공람	
수신	임원, 각 도협의회 및 지부(회)장		시간		
참조			번호		
			처리과		
제목	제20대 회장선거 관련 부정 선거운동 신고센터 운영 안내		담당자		

1. 관련 : 본회 제20대 회장 선거 관련 공고 알림(한돈협경 제174-10호, '21.9.2.)

2. 본 위원회에서는 임원선거규정 제5조(위원회의 직무)에 따라 선거 규정 위반자를 감시코자, 아래와 같이 부정 선거 신고센터를 운영하오니 임원선거 규정 등에서 정한 선거운동 방법을 위반한 경우 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가. 제20대 회장 선거 관련 부정 선거 운동 신고 센터 운영

○ 운영기간 : 2021. 9. 6 ~ 2021. 10. 12.

나. 신고방법 : 신고센터 이메일(koreapork2@naver.com) 제출

(실명, 연락처, 부정 선거 운동 내용 기재)

다. 신고내용 : 임원선거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선거방법을 위반한 경우

▶ 금지·제한 사항(임원선거규정 19조, 20조)

- ① 후보자에 대하여 비방, 중상모략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
- ② 폭력, 협박, 납치 등의 방법으로 회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
-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사무를 방해하는 행위
- ④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, 향응, 음식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요구 또는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
- ⑤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
- ⑥ 명함·선거공보 외 유인물(인쇄물)을 배포하는 행위

※ 문자 카톡·동영상 등을 활용한 홍보는 선거운동에 위배되지 않음(선거관리위원회 결정사항)

- ⑦ 후보자, 선거운동원으로 신고된 자 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(임원선거규정 19조)

“끝”

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 선거관리위원회

